

... 실용특전 행복주택

전남 최초 행복주택

목포 용해2지구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콜센터 | 1600-1004(평일 09:00~18:00)
홈페이지 | www.LH.or.kr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LH

함께 크는 행복주택 목포 용해2지구에서 만나보세요!

CONTENTS

- 01 행복주택 소개
- 04 입지 및 교통도
- 06 단지조감도, 단지배치도
- 08 단위세대 평면도, 실내투시도
- 16 동·호수 배치도
- 17 입주자모집공고
- 32 주요마감재 시설내역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2030세대가 집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기존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에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은 편리한 교통, 저렴한 주거비, 입주자 맞춤형 설계를 지향합니다.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미래를 위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젊은 계층의 주거비 절감과 새로운 도시창조를 위해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 징검다리가 되어드립니다!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계층에게 주거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립니다.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행복주택!
그 첫 만남을 목포 용해2지구 행복주택에서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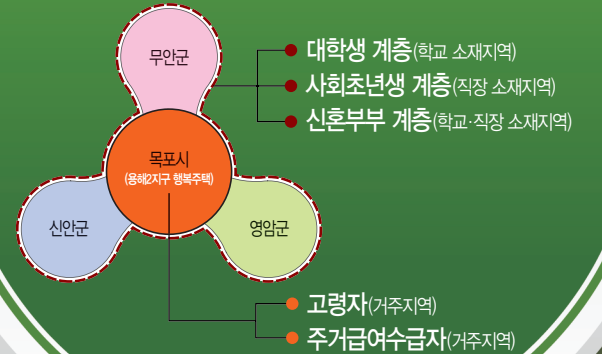


청년층
주거복지
실현

문화예술
소통·화합
공간

지역경제
활성

용해2지구 행복주택 공급 대상별 신청 가능한 지역 요건



목포 용해2지구 행복주택 공급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① 대학생 계층(대학생·취업준비생)

해당지역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인 대학생
대학(또는 고등학교등)을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자로서
해당지역 소재 대학(또는 고등학교등)을 졸업·중퇴한 자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본인·부모 합계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이하(3인 가구 기준 4,816,665원)여야 하며, 본인은 부동산 가액 12,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2,465만원 이하여야 함.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졸업 또는 중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

② 사회초년생 계층(사회초년생·재취업준비생)

해당지역에서 소득(또는 예술) 활동중인 소득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인 사회초년생
인근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미혼 무주택자인 재취업준비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80%이하이고 해당세대는 100% 이하,
(신청자가 세대주인 3인 가구 기준 본인 3,853,332원, 해당세대 4,816,665원 이하)
해당세대는 부동산 가액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2,767만원 이하여야 함.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입주자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여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2년 단위로 갱신 계약 합니다)

③ 신혼부부 (대학생·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해당지역에서 소득(또는 예술) 활동중인 자
해당지역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인 대학생
대학(또는 고등학교등)을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자로서 해당지역 소재
대학(또는 고등학교등)을 졸업·중퇴한 자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이거나, 위의 한가지를 충족하는 자로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자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3인가구 기준 4,816,665원) 이거나 맞벌이시 120%이하
(3인가구 기준 5,779,998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중
1인이 입주자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해당세대는 부동산가액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2,767만원 이하이어야 함.
(거주기간: 무자녀(6년), 자녀 1명(8년), 자녀 2명 이상(10년),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

④ 고령자

목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고령자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이며,
해당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3인 가구 기준
4,816,665)이하이고
부동산 가액 2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 2,767만원 이하여야 함.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

⑤ 주거급여 수급자

목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이며, 해당세대는 부동산 가액
12,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65만원 이하여야 함.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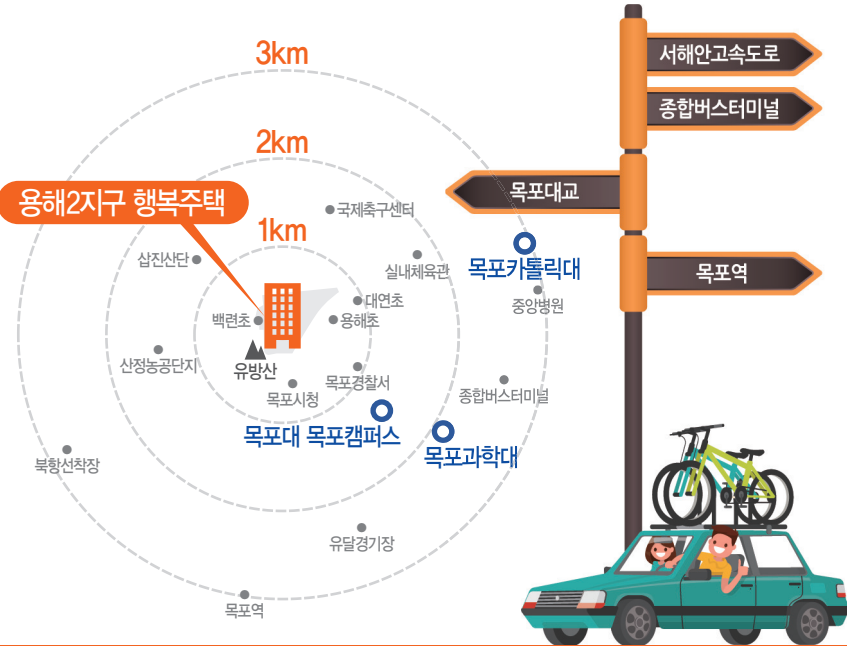
※**해당지역이란?** 목포시 또는 연접한 무인군, 신안군, 영암군

※공급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세요.(12월 29일 내인터넷 홈페이지 청약센터에 공고)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목포 행복주택!!

용해2지구에서 만나보세요!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은 물론 쾌적한 자연과 어우러진 웰빙라이프, 학교도 체육시설도 한발 가깝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상기 토지이용계획도 및 교통도(일러스트)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계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목포 용해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교통 행복특권

- 서해안고속도로, 호남선, 종합버스터미널 등 멀티교통망
- 대양·세라믹·삼진산단 인접, 목포대교로 대불산단 접근용의





교육 행복특권

- 목포대 목포캠퍼스, 목포과학대, 목포카톨릭대 인접
- 지구내 백련초(2017년 개교예정)를 비롯해 초·중·고, 대학이 밀집된 교육1번지





생활 행복특권

- 마트, 병·의원, 은행 등 단지외 가까운 거리에 생활편의시설
- 목포시청을 비롯해 경찰서 등 목포 행정의 요충지
- 유방산의 푸른 자연과 근린공원, 국제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유방산 삼나무숲길
숲의 푸른 공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
시민들에게 건강한 휴식과
활력 넘치는 생활을 드립니다



용해2지구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행복주택의 특권을 용해2지구에서 누리세요!

보다 스마트하게! 보다 실속있게! 쾌적한 단지설계에서
편리한 생활편의시설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시작됩니다

입주시 부담없이 몸만 들어와서 스마트한
첨단라이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세대를 위한 빌트인시스템(전용 21·23·26㎡)
- 냉장고, 가스쿠팡, 책상, 수납장, 소물장 설치

용해2지구 행복주택의 특전

01

저렴한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02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빌트인시스템 적용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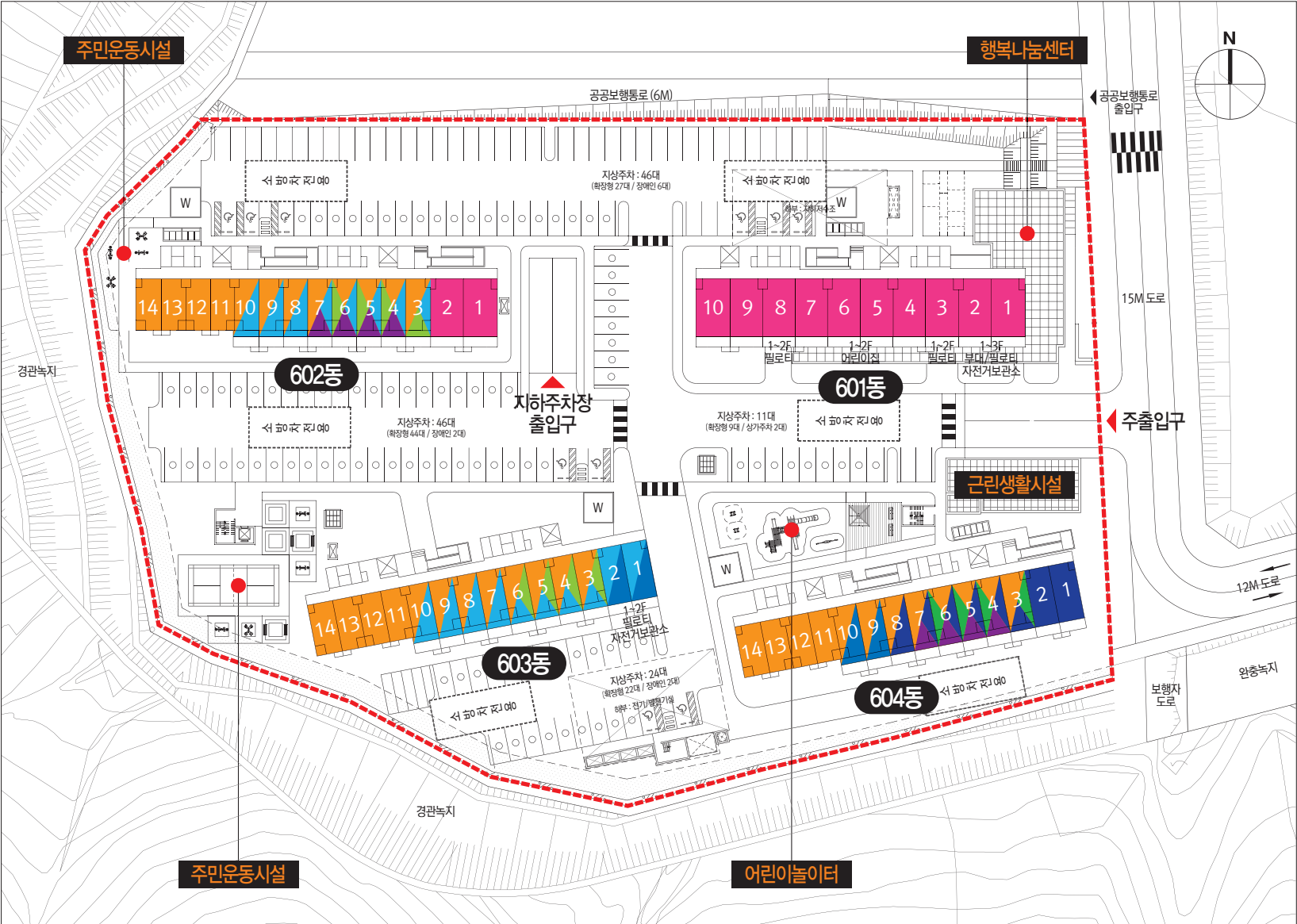
삶의 여유와
가치를 높여주는
커뮤니티 편의시설

용해2지구 행복주택 | 총 450호

배치계획		주택형(㎡)	호수
젊은 계층 81% (360호)	대학생/ 사회초년생	21A	160호
		23A1	16호
		26A1	94호
	신혼부부	36A	90호
취약 계층 등 19% (90호)	주거약자	26B	24호
	고령자	26A2	22호
	주거급여수급자	23A2	8호
		26A3	36호



※상기 조감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계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 시설물 등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난간 또는 생울타리로 시공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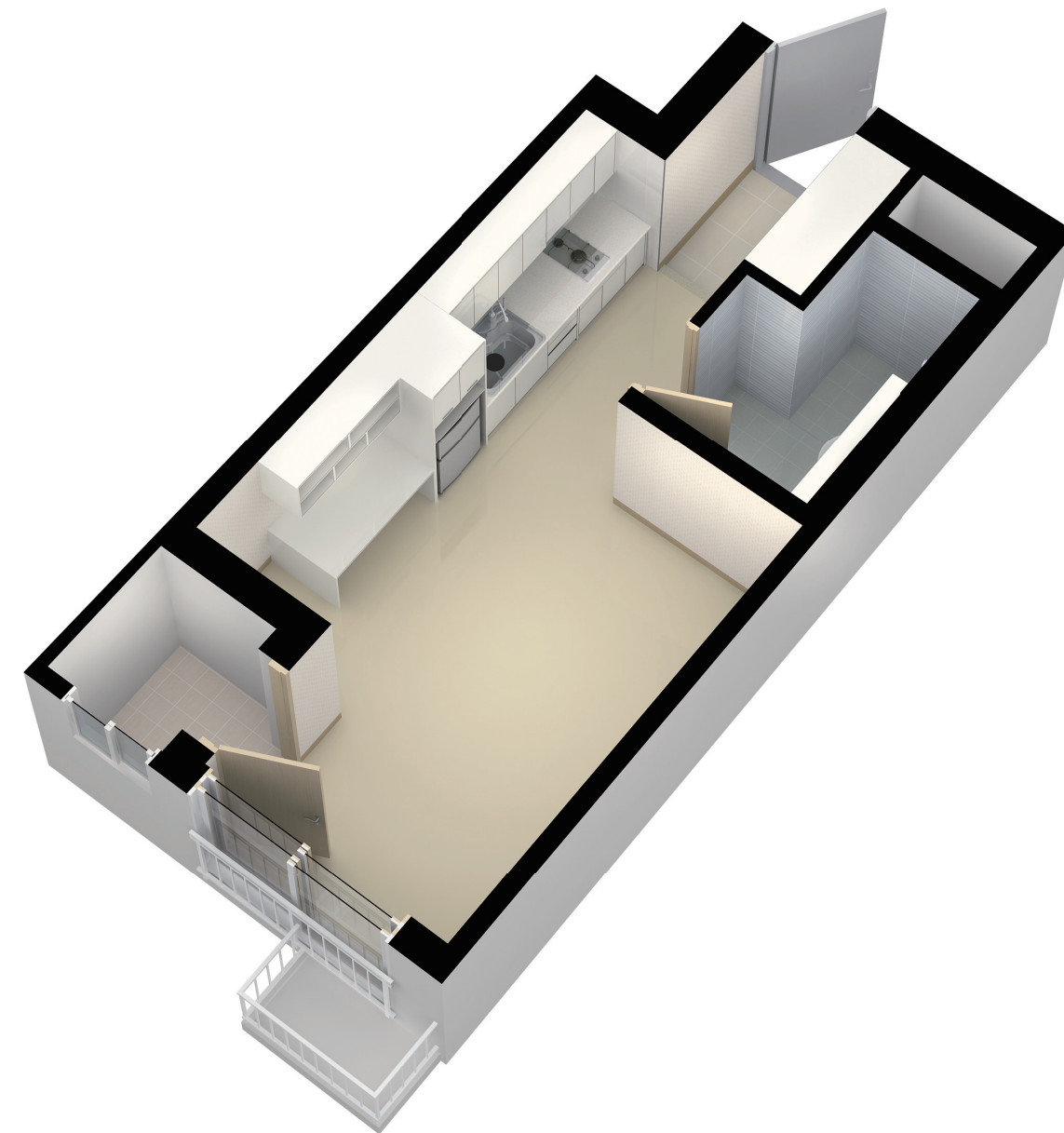
※상기 단지배치도(일러스트)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계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APPY HOUSING
UNI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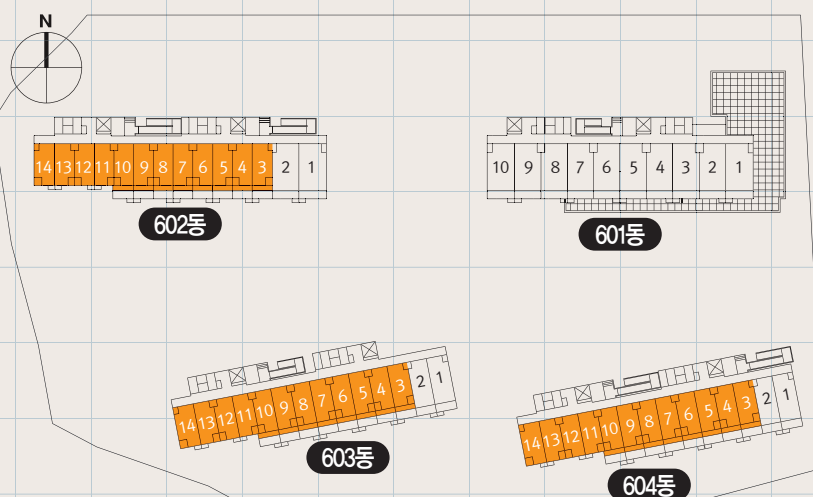
21A
160호

| 공급대상 |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택면적	
전 용 면 적	21.4300㎡
주거공용면적	11.5708㎡
기타공용면적	2.1725㎡
주 차 장	7.7464㎡
계 약 면 적	42.9197㎡
실별면적	
거 실 / 침 실	10.8000㎡
주 방 / 식 당	4.9600㎡
욕 실	3.1500㎡
현 관	1.7400㎡
발코니면적	
발 코 니	1.8000㎡



■ KEY MAP



※상기 평면도 및 실내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크기, 무늬 및 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란다 기둥 방향 및 세대 현관 개폐방향은 세대 라인에 따라 다릅니다.
 ※발코니 면적에는 기둥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사회초년생 계층에게만 빌트인(수납장, 책상, 소물장, 냉장고, 가스쿡탑)이 제공됩니다.
 ※전면 발코니 세탁기 설치공간 주변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됩니다.



23A1
16호

| 공급대상 | 대학생/사회초년생

23A2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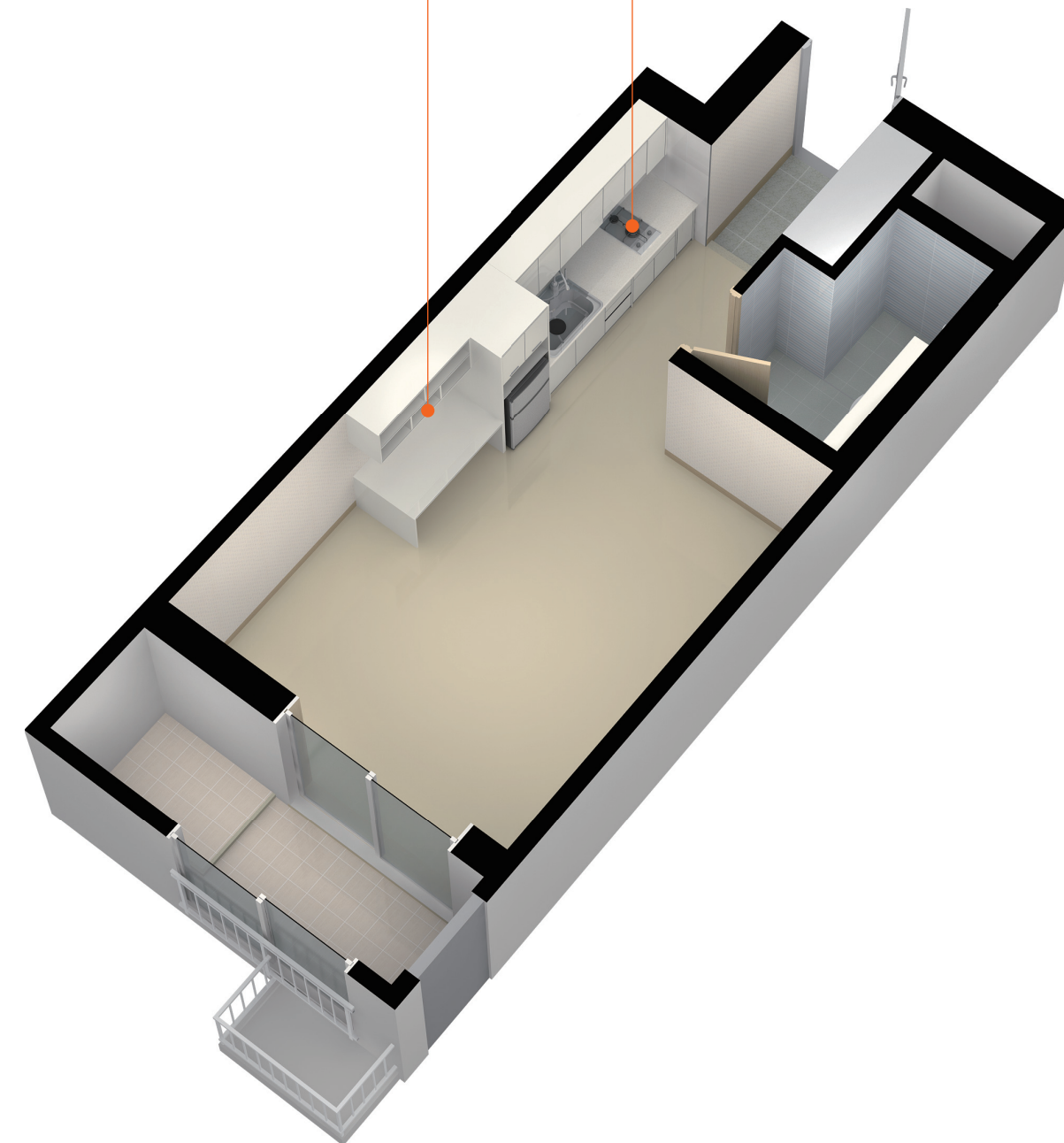
| 공급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면적	
전 용 면 적	23.5400㎡
주거공용면적	12.7101㎡
기타공용면적	2.3864㎡
주 차 장	8.5091㎡
계 약 면 적	47.1456㎡
실별면적	
거 실 / 침 실	11.6900㎡
주 방 / 식 당	6.1700㎡
욕 실	3.1500㎡
현 관	1.7500㎡
발코니면적	
발 코 니	5.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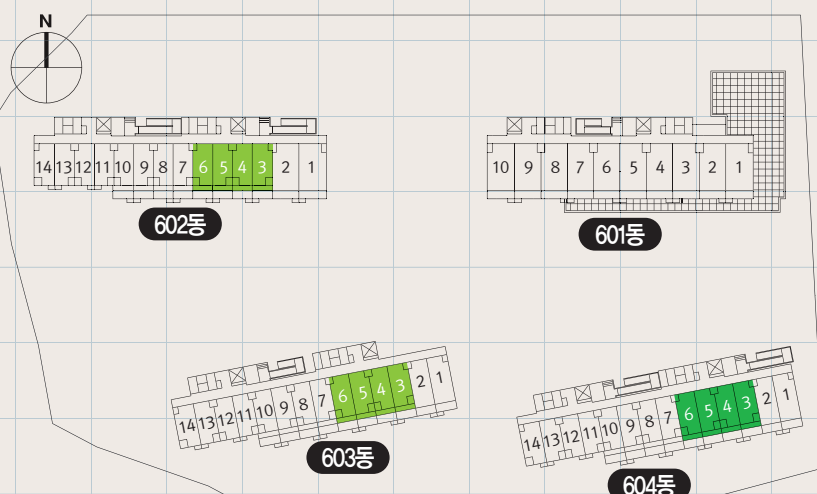
대학생/사회초년생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품목입니다.



대학생/사회초년생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품목입니다.



■ KEY MAP



※상기 평면도 및 실내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크기, 무늬 및 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란다 기둥 방향 및 세대 현관 개폐방향은 세대 라인에 따라 다릅니다.
 ※발코니 면적에는 기둥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사회초년생 계층에게만 빌트인(수납장, 책상, 냉장고, 소물장, 가스쿡탑)이 제공됩니다.
 ※전면 발코니 세탁기 설치공간 주변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됩니다.



HAPPY HOUSING UNIT PLAN

26A1

94호

| 공급대상 | 대학생, 사회초년생

26A2

22호

| 공급대상 | 고령자

26A3

36호

| 공급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26B

24호

| 공급대상 | 주거약자용

26A1 / 26A2 / 26A3

주택면적

전 용 면 적 26.6000㎡

주거공용면적 14.3623㎡

기타공용면적 2.6966㎡

주 차 장 9.6152㎡

계 약 면 적 53.2741㎡

실별면적

거 실 / 침 실 14.7500㎡

주 방 / 식 당 6.1700㎡

욕 실 3.1500㎡

현 관 1.7500㎡

발코니면적

발 코 니 5.4000㎡

26B

주택면적

전 용 면 적 26.8100㎡

주거공용면적 14.4757㎡

기타공용면적 2.7179㎡

주 차 장 9.6911㎡

계 약 면 적 53.6947㎡

실별면적

거 실 / 침 실 14.1000㎡

주 방 / 식 당 6.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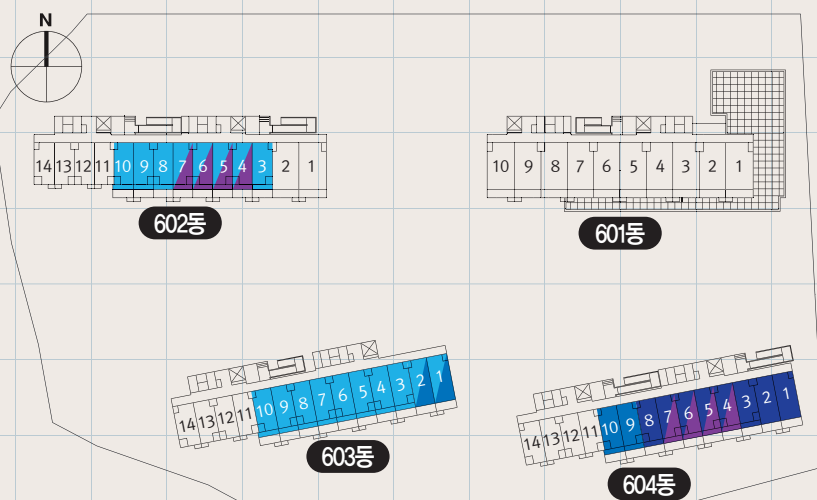
욕 실 3.9800㎡

현 관 1.8000㎡

발코니면적

발 코 니 5.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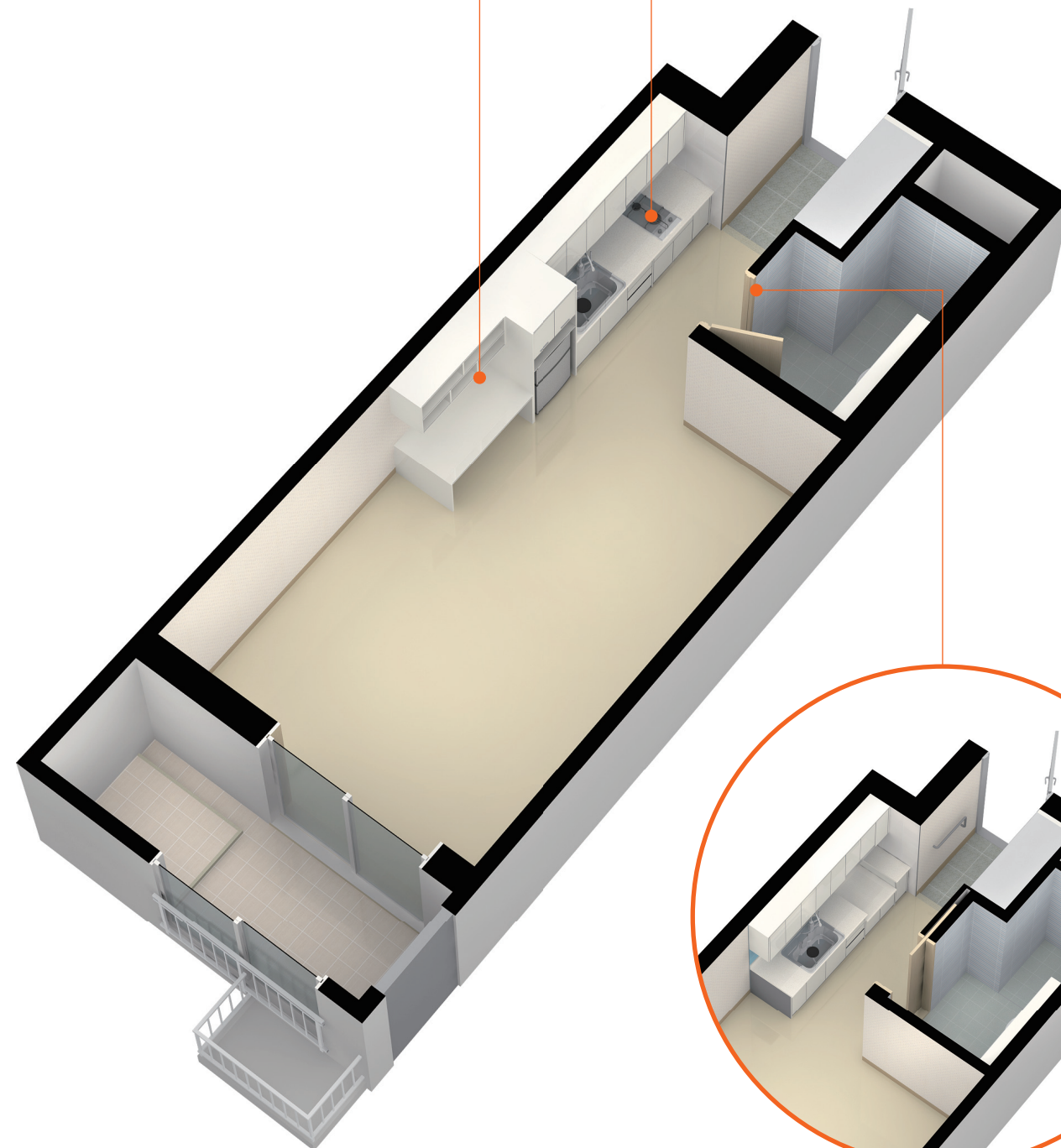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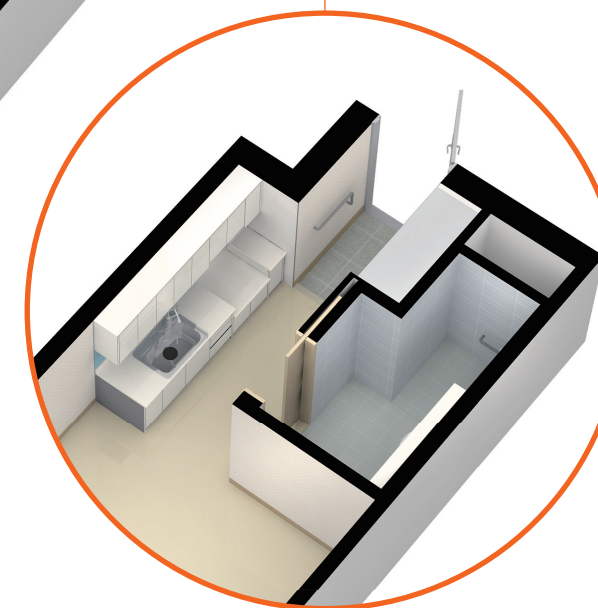
주거약자용



700 | 1185 | 1715

대학생/사회초년생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품목입니다.대학생/사회초년생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품목입니다.

주거약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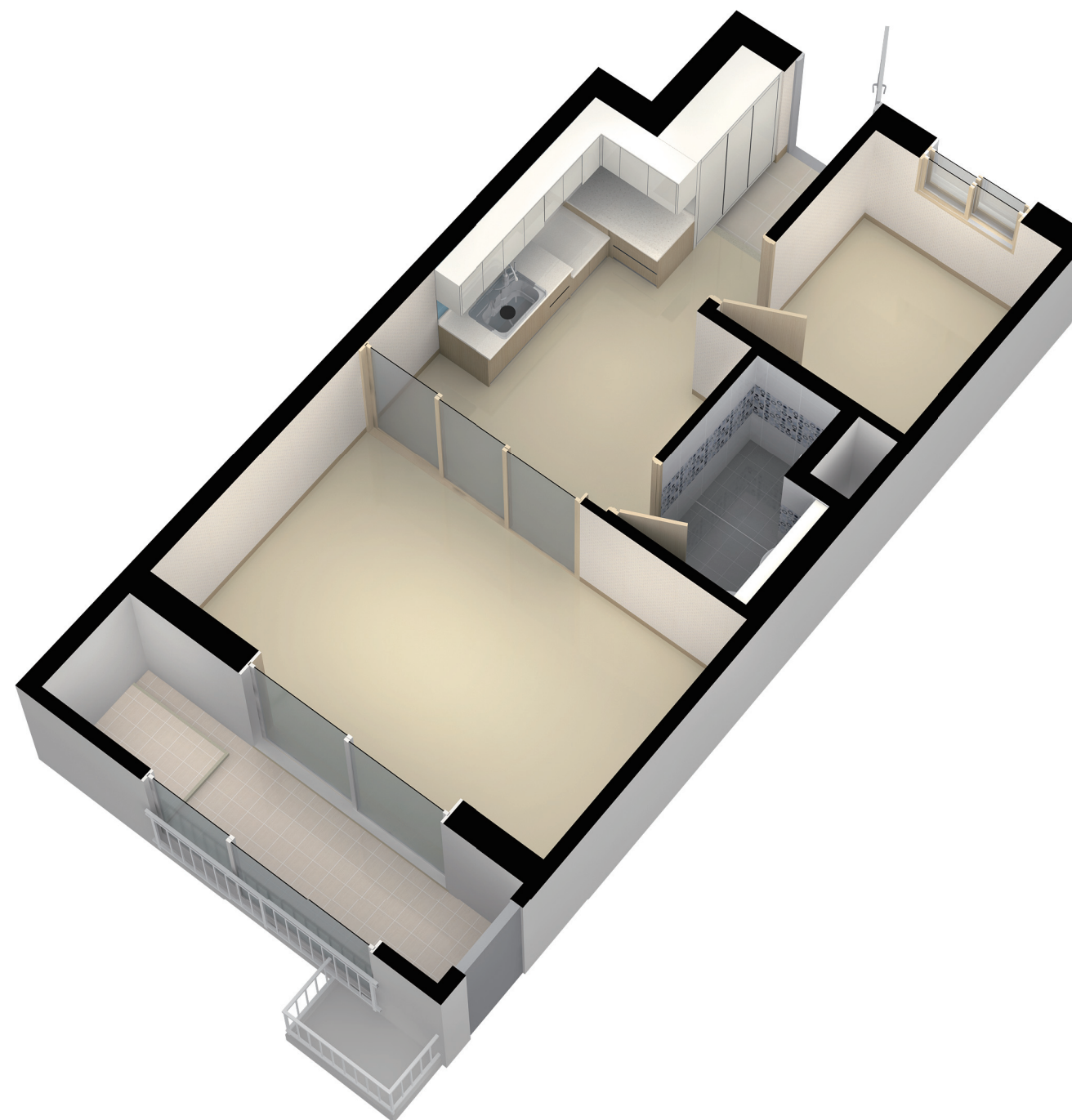
※상기 평면도 및 실내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크기, 무늬 및 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란다 기둥 방향 및 세대 현관 개폐방향은 세대 라인에 따라 다릅니다.
 ※발코니 면적에는 기둥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사회초년생 계층에게만 빌트인(수납장, 책상, 냉장고, 소물장, 가스쿡탑)이 제공됩니다.
 ※주거약자세대에게는 안전손잡이(좌변기, 샤워부스, 현관), ABS 미닫이문(욕실), 비상콜(욕실), 아간센서등(욕실벽)이 일괄 설치됩니다.
 ※전면 발코니 세탁기 설치공간 주변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됩니다.

HAPPY HOUSING
UNI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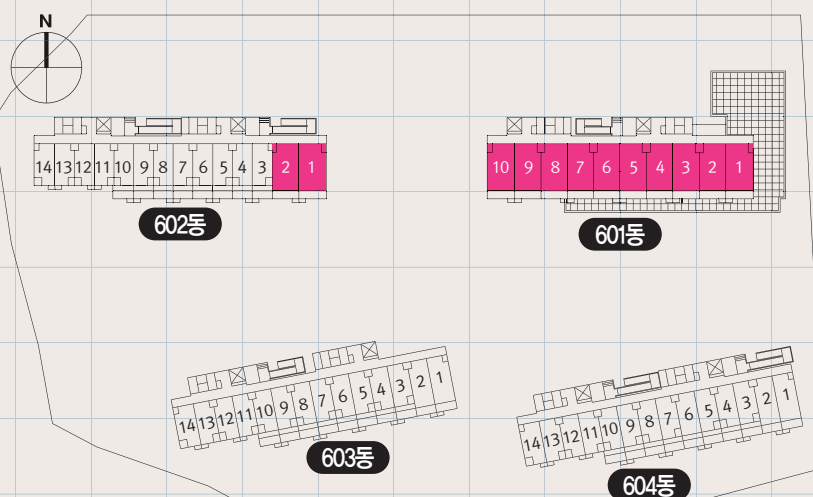
36A
90호

공급대상 | 신혼부부

주택면적	
전 용 면 적	36.1700㎡
주거공용면적	19.5295㎡
기타공용면적	3.6668㎡
주 차 장	13.0745㎡
계 약 면 적	72.4408㎡
실별면적	
거 실 / 침 실	14.0700㎡
침 실	6.0200㎡
주 방 / 식 당	10.370㎡
욕 실	3.1600㎡
현 관	1.7700㎡
발코니면적	
발 코 니	7.2000㎡



KEY MAP



※상기 평면도 및 실내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크기, 무늬 및 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란다 기둥 방향 및 세대 현관 개폐방향은 세대 라인에 따라 다릅니다.
 ※발코니 면적에는 기둥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면 발코니 세탁기 설치공간 주변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됩니다.

용해2지구 행복주택 동·호수 배치도

10층	1010	1009	1008	1007	1006	1005						
9층	910	909	908	907	906	905	904	903				
8층	810	809	808	807	806	805	804	803				
7층	710	709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6층	610	609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5층	510	509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4층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3층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주민시설		관리사무실	
2층	210	209	보육시설				필로티					
1층	110	109							필로티	경로당		

타입	36A 신혼부부										
601동(74호)											

9층	914	913	912	911	910	909	908	907	906	905	904	903		
8층	814	813	812	811	810	809	808	807	806	805	804	803		
7층	714	713	712	711	710	709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6층	614	613	612	611	610	609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5층	514	513	512	511	510	509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4층	414	413	412	41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3층	314	313	312	311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2층	214	213	212	211	210	209	208	207	206	205	204	203	필로티	
1층	114	113	112	111	110	109	108	107	106	105	104	103		

타입	21A 대학생/사회초년생	26A1 대학생/사회초년생	23A1 대학생/사회초년생	26A2 고령자
603동(118호)				

10층	1014	1013	1012	1011	1010	1009	1008	1007	1006	1005	1004	1003		
9층	914	913	912	911	910	909	908	907	906	905	904	903		
8층	814	813	812	811	810	809	808	807	806	805	804	803	802	801
7층	714	713	712	711	710	709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6층	614	613	612	611	610	609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5층	514	513	512	511	510	509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4층	414	413	412	41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3층	314	313	312	311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2층	214	213	212	211	210	209	208	207	206	205	204	203	202	201
1층	114	113	112	111	110	109	108	107	106	105	104	103	102	101

타입	21A 대학생/사회초년생	26A1 대학생/사회초년생	23A1 대학생/사회초년생	26B 주거약자	36A 신혼부부
602동(136호)					

9층	914	913	912	911	910	909	908	907	906	905	904	903		
8층	814	813	812	811	810	809	808	807	806	805	804	803		
7층	714	713	712	711	710	709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6층	614	613	612	611	610	609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5층	514	513	512	511	510	509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4층	414	413	412	41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3층	314	313	312	311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2층	214	213	212	211	210	209	208	207	206	205	204	203	202	201
1층	114	113	112	111	110	109	108	107	106	105	104	103	102	101

타입	21A 대학생/사회초년생	26A2 고령자	23A2 주거급여수급자	26A3 주거급여수급자
604동(122호)				

※ [] 세대는 고령자 전용세대입니다. ※ [] 세대는 주거약자용 전용세대입니다.

※ 대학생 계층과 사회초년생 계층의 우선 공급 후 잔여 일반공급 물량(21A형 160호 / 23A1형 16호 / 26A1형 94호 / 36A형 90호)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목포용해2 6-1BL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6. 12. 29]

I 건설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945 (목포용해2지구 6-1BL, 450세대)

• 목포용해2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해당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이고 소득활동중이 아닌 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 소재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자

② 사회초년생 계층

- 사회초년생 : 해당지역에서 소득 또는 예술활동중이며 소득활동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자
- 재취업준비생 : 해당지역 직장을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해당지역에서 소득 또는 예술활동중이며 혼인 합산기간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대학생신혼부부 : 상기 대학생 계층 요건을 갖추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상기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 요건(혼인요건 제외)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자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④ 고령자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의 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주거급여수급자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으로만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목포 포미4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목포용해2 행복주택에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페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II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태	공급 대상	공급호수		주택 유형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시기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천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21	대학생 계층	12	80	21A	21.43	11.5708	2.1725	7.7464	42.9197	11,560	2,312	9,248	63	(+)0	11,560	63,000	4~6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17.11
		(-)9,000												2,560	93,000				
	사회초년생 계층	68								12,240	2,448	9,792	67	(+)1,000	13,240	62,000	6		
		(-)9,000												3,240	97,000				
23	대학생 계층	2	8	23A1	23.54	12.7101	2.3864	8.5091	47.1456	12,716	2,543	10,173	69	(+)1,000	13,716	64,000	4~6		
		(-)10,000												2,716	102,330				
	사회초년생 계층	6								13,464	2,692	10,772	74	(+)2,000	15,464	64,000	6		
		(-)10,000												3,464	107,330				
	주거급여 수급자	4								4	23A2	11,010	2,202	8,808	60	(+)0	11,010	60,000	20
		(-)8,000														3,010	86,660		

26	대학생 계층	16	16	26A1	26.60	14.3623	2.6966	9.6152	53.2741	14,212	2,842	11,370	78	(+)3,000	17,212	63,000	4~6
	사회초년생 계층	31	31							15,048	3,009	12,039	82	(-)11,000	3,212	114,660	
	주거급여 수급자	18	18	26A3						12,300	2,460	9,840	67	(+)1,000	13,300	62,000	6
	고령자 (주거약자용외)	11	11	26A2						15,580	3,116	12,464	85	(-)12,000	3,048	122,000	
	고령자 (주거약자용)	12	12	26B						15,580	3,116	12,464	85	(-)12,000	3,580	125,000	20
36	신혼부부 계층	45	45	36A	36.17	19.5295	3.6668	13.0745	72.4408	22,080	4,416	17,664	121	(+)12,000	34,080	61,000	6~10
														(-)17,000	5,080	177,660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 23 및 26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사회초년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3A1, 26A1형의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23A1형은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6A1형은 먼저 동일평형의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의 물량 역시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평형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2형의 주거약자용 주택 외 고령자의 일반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평형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평형 "대학생 계층"과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3A2, 26A3형의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23A2형은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6A3형은 먼저 동일평형의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의 물량 역시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인 경우 8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사회초년생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의 주택에는 수납장, 책상, 소물장, 냉장고, 가스쿠팡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로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III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 공급대상 중 대학생 계층·사회초년생 계층·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계층 및 신혼부부 계층 중 예외적 사항 제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㉔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 ㉔ (대학생) 해당주택건설지역(목포시) 또는 연접지역(전남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소득활동중이 아닌 자로서, 1) 해당주택건설지역(목포시) 또는 연접지역(전남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에 거주(부 또는 모의 거주지가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아닌 경우만 해당) 또는 2) 해당주택건설지역(목포시) 또는 연접지역(전남무안군, 신안군, 영암군)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이하일 것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름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4,816,665원 이하
4인	5,393,154원 이하
5인 이상	5,475,403원 이하
④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이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5만원이하 일 것(국민임대 자산기준)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직장가입자)을 말함. 자영업자 등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으로 간주함
- ※ 소득활동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활동중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 ※ ①-㉔의(1)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생은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분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
- ※ 과거 행복주택에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가능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자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한 목포시 에	- 대 학 생 :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거주하는 자
------	------------------------	---

• 배점

대학생	항목	배점기준	배점
	부모거주	부모 모두 목포시 및 그 연접지역 외 지역 에 거주	3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목포시 연접지역 에 거주 단, 부모 모두가 목포시 외의 지역 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1점

취업준비생	항목	배점기준	배점
	본인거주	목포시 에 3년 이상 거주	3점
		목포시 에 3년 미만 거주	1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21A, 23A1 및 26A1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 추첨함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사회초년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사회초년생은 ①~②와 ②~⑥, 재취업준비생은 ①~④와 ②~⑥)을 모두 갖춘 자

- ① ~ ② (**사회초년생**) 해당주택건설지역(목포시) 또는 연접지역(전남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에서 소득활동 또는 예술활동중인 자(휴직포함)
- ④ (**재취업준비생**) 해당주택건설지역(목포시) 또는 연접지역(전남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② 소득활동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	사회초년생 본인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3인 이하	4,816,665원 이하	3,853,332원 이하
	4인	5,393,154원 이하	4,314,523원 이하
	5인 이상	5,475,403원 이하	4,380,322원 이하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소득만 기준	3,853,332원 이하	

- ⑤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 일 것(10년공임 자산요건)
⑥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활동**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으로 판단함
※ **예술활동**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을 증명한 경우에 한함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예술활동 지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한 예술활동 근거지를 말함
※ **소득활동 합산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소득활동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및 고등·고등기술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활동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
※ **예술활동중인 자**의 경우에도 **소득활동 합산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함
※ "**사회초년생 계층**"의 **해당 세대**는 ①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공급신청자가 세 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일반공급은 공급신청자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한 목포시 에	- 사회초년생 : 소득활동 또는 예술활동중인 자 - 취업준비생 : 거주하는 자
------	------------------------	--

• 배점

항목		배점기준	배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복주택이 위치한 목포시 에 3년 이상 거주	3점
		행복주택이 위치한 목포시 에 3년 미만 거주	1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3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1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추천 ※ 21A, 23A1 및 26A1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 추천함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신혼부부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②와 ②~⑥을, 대학생신혼부부는 ①~④와 ②~⑥을,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②~⑤, ⑦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 ② (**신혼부부**) 해당주택건설지역(목포시) 또는 연접지역(전남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에서 **소득활동 또는 예술활동중인 자**(휴직포함)
- ④ (**대학생신혼부부**) 해당주택건설지역(목포시) 또는 연접지역(전남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소득활동중이 아닌 자로서, 1)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부 또는 모의 거주지가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하고 있거나, 2)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
- ④ (**예비신혼부부**) 위 ①~② 또는 ①~④를 충족하는 자로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를 말함)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3인 이하	4,816,665원 이하	5,779,998원 이하
4인	5,393,154원 이하	6,471,784원 이하
5인 이상	5,475,403원 이하	6,570,483원 이하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 일 것(10년공임 자산요건)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⑥ 혼인 중일 것
⑦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무주택자**란 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신혼부부**", "**대학생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①~④의(1)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생은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소득활동**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으로 판단함

※ **예술활동**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을 증명한 경우에 한함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로 확인함

※ **예술활동 지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한 예술활동 근거지를 말함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 중 ①~④, ②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 중 ①~④, ② 및 ⑥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분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됨.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한 목포시 에 거주하는 자
------	-------------------------------

• 배점

(예비)신혼부부	항목	배점기준	배점
	소득(또는 예술) 활동지역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목포시 인 자	3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목포시 의 연접지역인 자	1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3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1점

(예비)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항목	배점기준	배점
	학교소재지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목포시 인 자	3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목포시 의 연접지역인 자	1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3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1점

※ 배점 항목의 '학교소재지'는 신청자가 "대학생"인 경우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대학교**이며, 신청자가 "취업준비생"인 경우 **졸업 또는 중퇴한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목포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천
일반공급	추천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목포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4,816,665원 이하
4인		5,393,154원 이하
5인 이상		5,475,403원 이하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 일 것(10년공임 자산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한 목포시 에 거주하는 자
------	-------------------------------

• 배점

항목		배점기준	배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만 75세 이상	3점
		만 70세 이상 ~만 75세 미만	2점
		만 70세 미만	1점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목포시 에 5년 이상 거주	3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목포시 에 5년 미만 거주	1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3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1점
④	추가가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호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목포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천
일반공급	추천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① 목포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5만원 이하 일 것(국민임대 자산기준)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한 목포시 에 거주하는 자
------	-------------------------------

• 배점

항목		배점기준	배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목포시 에 5년 이상 거주	3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목포시 에 5년 미만 거주	1점
②	추가가점	국가유공자·보호보상대상자·5.18민주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목포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천
일반공급	추천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Ⅳ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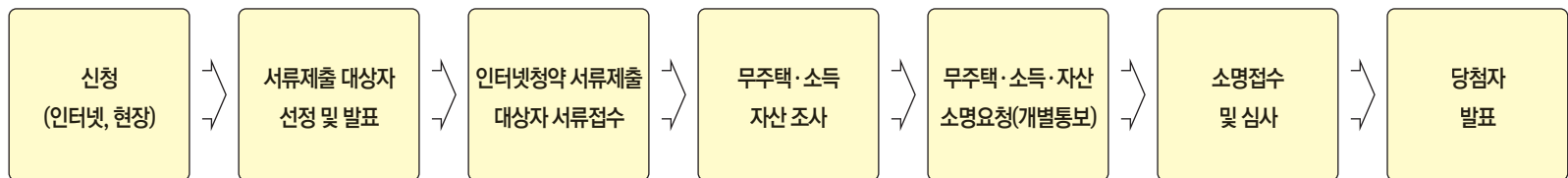
구분	공급대상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6번 항목 참고)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우선 공급	대학생 계층	'17.1.12.(목) 10:00~ '17.1.16.(월) 17:00 ※ 토,일요일 포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은 '17.1.12.(목) 10:00~ '17.1.13.(금) 24:00 ※ 현장접수 장소 목포 포미4단지관리사무소 2층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지구로 88번길 24)	'17.2.1(수) 17:00 이후 - 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ARS(1661-7700)	'17.2.7(화)~2.9(목) 10:00~16:00 ※ 현장접수 장소 목포 포미4단지 관리사무소 2층(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지구로 88번길 24) ※ 우편접수 장소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시청로 91, 9층 임대공급운영부)	'17.3.14(화) 17:00 이후 - 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ARS(1661-7700)	- 온라인계약 '17.3.20.(월) 10:00~ '17.3.22.(수) 18:00 - 현장계약 '17.3.23.(목)~ '17.3.24.(금) 10:00~16:00 ※ 현장계약 장소 목포 포미4단지 관리사무소 2층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지구로 88번길 24)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 공급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으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우편송부 주소는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9층 임대공급운영부)이며, 현장(목포 포미4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서 또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해당세대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앱("LH청약센터" 검색) 설치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자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속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류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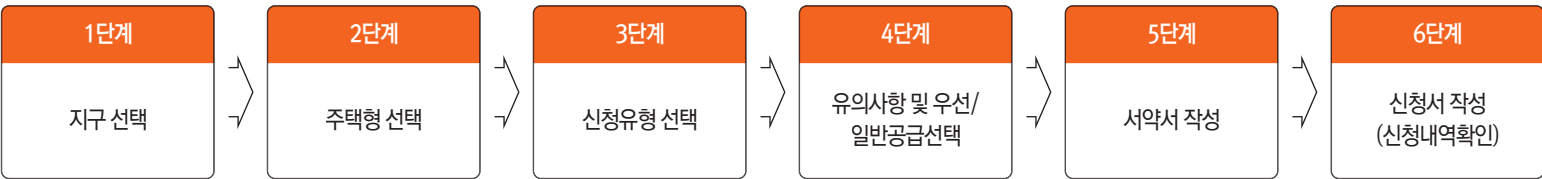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16. 11. 3(목)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16. 11. 8(화) ~ 2016. 11. 10(목), 10:00~16:00]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행복주택 담당 (우편번호 61947)
 - 봉투 겉면에 "광주효천2 행복주택 서류제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17년 1월 12일(목) 오전10시부터 마감일 2017년 1월 16일(월)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17. 1. 12일(목) 오전10시 ~ 13일(금)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6. 12. 2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공동 제출서류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 상 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기타 서류 • 본 인 신 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 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와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해당 대학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부모 거주지 확인 필요한 경우)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사회초년생 계층	사회 초년생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고등기술학교인 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자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해당 학교
	재취업 준비생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 퇴직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퇴직증명서 추가 제출) •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자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지방고용노동청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공고일 현재 가입이력이 표기되도록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자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주민센터
	대학생 신혼부부	□ 대학생의 경우는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대학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 지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 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조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VIII 유의사항

거주기간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6년 (단, 취업준비생은 4년)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8년), 자녀 2명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활동 지역이 변경된 경우(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내 지역변경은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계층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 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사회초년생 계층의 경우 "소득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졸업 또는 종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신청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기존 임대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 지구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외의 신설 예정도로 및 주변 시설물은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주변에 청호중학교(이설공사중), 백련초등학교(가칭), 천주교공동묘지, 빗물저류지, 산정도시자연공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 행복주택 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에는 15m도시계획도로, 근린공원, 빗물저류지, 청호중학교(이설공사중)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산정도시자연공원, 천주교공동묘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공동주택부지와 종교시설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601동과 604동 사이 동측 1개소이며, 안접도로 및 단지 출입도로 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외부 **단지 발생구간**은 비탈면 또는 옹벽 등으로 마감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보도, 가로등, 출입구, 율타리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전선로 지중화용 지상기기, 노상시설물 등(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구변 빗물저류지 및 근린공원 등으로 인해 악취 및 해충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2차원, 3차원), 각종 이미지컷 등의 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15m도시계획도로에서 단지내부로 진입하는 차도 및 보도가 설치되고, 출입구 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시설물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상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외 시설물 인접세대 및 동호배치에 따른 일부세대는 생활 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세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시설물: 안접도로, 근린공원, 하천, 보도, 전주, 가로등 등
 - 단지내 시설물: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옥외계단실, 장비반입구,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펌프실, 환룸, 재활용품보관소, 도로, 주차장, 환기탑 및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차량출입 램프,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공청안테나 등
- 단지내 시설물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레벨, 층고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층세대, 저층세대 등)는 사다리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각종 면적은 배분과정 상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위세대 전용·공용면적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시공사 부도 등)로 인하여 공사 준공 및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동 내부에는 2개의 직통계단(내부)이 설치되며, 내부계단은 연청구조로 시공되며, 복도창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601동은 저층부에 어린이집, 노인정, 관리사무소, 사회적기업,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됩니다.
- 601동 남측 저층부에는 아파트 및 어린이집, 노인정 진입을 위한 필로티가 설치됩니다.
- 603동 남측 저층부에는 아파트진입을 위한 필로티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기단부(3층이하), 출입구 등은 석재뿔칠과 외부수성페인트로 혼용하여 마감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축벽에 CI(LH), BI(천년나무) 등의 로고가 표시될 예정이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중 사회적기업,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용도, 구조,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318대(지상153대, 지하163대, 상가2대)이며, 단지배치 상 동별로 장애인주차장을 포함한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입주자의 의견이나 민원에 의해서 추가 또는 변경설치가 불가하오니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 내에는 펌프실, 저수조, 환룸, 재활용품보관소, 옥외계단실, 환기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소음, 진동, 미관저해, 악취, 해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용 전기시설물(전기실, 발전기실)은 별도건물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 부근에 위치한 603동 604동에 비상발전기 가동시 미세한 소음 매연,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601동 옥상에 방송공동수신설비(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설치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 생물타리담장 및 옹벽난간 등이 시공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2개소)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하며, 단지외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전·후·측면에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됩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단지와 도로와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경사로 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실은 일부세대(주거약자세대)를 제외하고 조립식 옥실로 시공됩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이 601동 부대복리시설 1층 복도, 603동 1층 필로티에 설치되며, 단지여건상 602동 및 604동은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실내치수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 및 실외기, TV 등)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내부 규모를 확인하시고 이사 및 구매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로 인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 중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해 샘플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가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전면발코니 세대 간 벽체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면발코니 최상층 천정마감은 PVC마감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면발코니 세탁기 설치위치 뒤편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21타입 및 23, 26타입중 일부 지정된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공급세대는 빌트인 가구(책상, 냉장고장, 냉장고, 가스쿡탑 등)가 설치되며, 이외의 공급세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구(주방, 소물장, 신발장, 수납장, 책상 등) 뒤편 및 하부에는 마감재(타일 및 롬카펫 등)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세대(26B타입)는 일괄설치 시설로 인하여 옥실, 환관 등의 마감이 일반세대와 다르게 설치되오니 공급세대 확인 시 주의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거약자세대 일괄설치 시설: 안전손잡이(좌변기, 샤워부스, 환관), 미닫이문(옥실), 비상콜(옥실), 야간센서등(옥실벽) 등
- 장애인 및 주거약자세대 편의증진시설 관련 일부항목은 현장여건상 2017년 3월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일반사항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차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발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발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X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목포용해2 6-1BL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송 학 건 설 동 부 총 합 개 발 (주)	-	-

X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온라인계약체결시 편의시설 설치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는 계약체결 기한(2017. 3. 24)내 LH 광주전남지역본부로 등기우편(소인이 2017. 3. 24 이내여야함)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신청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보호보상대상자, 신체장애등급 3급이상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구분	설치항목		신청대상
현관	마루গুলো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상이등급 3급이상)
욕실 (1개소에 한함)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청각장애인(상이등급 3급이상)
	가스밸브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지체·뇌병변(상이등급 3급이상)
	아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시각장애인(상이등급 3급이상)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상이등급 3급이상)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신청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예정자로서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해당대상인 경우에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분	시설내용[단위세대]	신청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3급이상 지체·뇌병변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상기 안내항목 중 설치불가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있을 수 있음)
- 온라인계약체결 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행복주택공급 담당자 앞(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으로 반드시 등기우편(우체국 소인이 2017. 3. 24 이내여야 함) 송부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팸플렛 배부처	• 목포 포미4단지 관리사무소 (전남 목포시 용해지구 88번길 24) • LH 목포권주거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19번길 81, 옥암동 KT 하당사옥 5층) • 12. 29(목), 14시 이후 (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포털(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http://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접수처 약도	
도로명 주소	전남 목포시 용해지구 88번길 24 (목포 포미4단지 관리사무소 2층)

2016. 12. 29

주요마감재 시설내역

블록	품 목		시 설 내 역	21A	23A1	23A2	26A1	26A2	26A3	26B	36A	비 고
4	현 관	바닥	자기질타일	○	○	○	○	○	○	○	○	
		벽	실크도배지	○	○	○	○	○	○	○	○	
		천정	발포도배지	○	○	○	○	○	○	○	○	
		신발장	HPM	○	○	○	○	○	○	○	○	
		현관문	철재여닫이문(결로방지)	○	○	○	○	○	○	○	○	
		현관 도어록	레버형	○	○	○	○	○	○	○	○	
		현관등	EL(센서등)	○	○	○	○	○	○	○	○	
	거실 / 주방	바닥	룼카펫	○	○	○	○	○	○	○	○	
		벽	실크도배지	○	○	○	○	○	○	○	○	
		천정	발포도배지	○	○	○	○	○	○	○	○	
		거실 분합문	목재 미서기문(36타입)	○	○	○	○	○	○	○	○	
		주방가구	HPM	○	○	○	○	○	○	○	○	
		싱크대 상판	BMC	○	○	○	○	○	○	○	○	
		책상	HPM(노출선반:LPM)	○	○	×	○	×	×	×	×	
		상부수납장	HPM	○	○	×	○	×	×	×	×	
		소물장	HPM(냉장고포함)	○	○	×	○	×	×	×	×	
		가스레인지	2구쿡탑	○	○	×	○	×	×	×	×	
		주방벽	도기질타일	○	○	○	○	○	○	○	○	
		레인자후드	슬림형	○	○	○	○	○	○	○	○	
		개수대	언더싱크	○	○	○	○	○	○	○	○	
		싱크수전	온냉수혼합꼭지(대불이, 레버식)	○	○	○	○	○	○	○	○	
		비디오폰	컬러LCD	○	○	○	○	○	○	○	○	
		거실등	LED	○	○	○	○	○	○	○	○	
		주방등	LED	○	○	○	○	○	○	○	○	
		바닥	룼카펫	○	○	○	○	○	○	○	○	
	침 실	벽	실크도배지	○	○	○	○	○	○	○	○	
		천정	발포도배지	○	○	○	○	○	○	○	○	
		침실문	ABS 여닫이문	○	○	○	○	○	○	○	○	
		창호	합성수지 미서기창	○	○	○	○	○	○	○	○	
		침실등	LED	○	○	○	○	○	○	○	○	36A 침실2 : FPL적용
	욕 실	바닥	자기질타일	○	○	○	○	○	○	○	○	
		벽	도기질타일	○	○	○	○	○	○	○	○	
		천정	SMC	○	○	○	○	○	○	○	○	
		욕실문	ABS	○	○	○	○	○	○	○	○	
		욕실장	PS수납장(거울부착)	○	○	○	○	○	○	○	○	
		세면기	도기질(단독형)	○	○	○	○	○	○	○	○	
		양변기	도기질(투피스형)	○	○	○	○	○	○	○	○	
		샤워수전	벽붙임(핸드샤워식)	○	○	○	○	○	○	○	○	
		세면가수전	온냉수혼합꼭지(레버식)	○	○	○	○	○	○	○	○	
		기타	휴지걸이, 수건걸이 설치	○	○	○	○	○	○	○	○	
		욕실등	EL	○	○	○	○	○	○	○	○	
	발코니	바닥	자기질타일	○	○	○	○	○	○	○	○	
		벽	탄성도로	○	○	○	○	○	○	○	○	
		천정	탄성도로	○	○	○	○	○	○	○	○	
		발코니샤시	합성수지 미서기창	○	○	○	○	○	○	○	○	
		비상탈출구	경량칸막이(섬유강화시멘트판)	○	○	○	○	○	○	○	○	
		보일러	가스보일러(콘덴싱)	○	○	○	○	○	○	○	○	
		세탁가수전	가로꼭지(화초물주기수전 포함)	×	○	○	○	○	○	○	○	
		발코니등	EL	○	○	○	○	○	○	○	○	
	기 타	온도조절기	설치(각세대 거실 및 침실)	○	○	○	○	○	○	○	○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설치(각세대)	○	○	○	○	○	○	○	○	
		원격감침 시스템	설치(수도, 전기)	○	○	○	○	○	○	○	○	
		위성TV수신 시스템	무궁화위성 5, 6호	○	○	○	○	○	○	○	○	
		정보통신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	○	○	○	○	○	○	○	
		CCTV 시스템	IP카메라(각동, 주차장, 놀이터 등)	○	○	○	○	○	○	○	○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공급세대에 한하여 빌트인 가구 및 가전이 설치됩니다.
※빌트인 설치항목 : 수납장(HPM), 책상(HPM), 소물장(HPM), 냉장고(소형), 가스쿡탑(2구)
※주거약자세대 일괄 설치품목 : 안전손잡이(좌변기, 샤워부스, 현관), 바닥단차높이기(욕실), ABS 미닫이문(욕실), 비상골(욕실), 아간센서등(욕실벽) 설치
※상기 마감재는 자체의 품질품구기타사유 등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사용 될 수 있습니다.

고객 사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그림, CG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동배치, 외부색채, 건물외관 및 기타 주변 환경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단지조감도, 단지배치도(일러스트)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건물 외관 디자인, 색채, 단지 조정, 세부 식재계획 및 시설물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및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당사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권 등은 동별·층별로 차이가 있으며, 도로 인접으로 도로 소음 발생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외관 및 세대 측벽에 당사 홍보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 항목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